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5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 송옥주 · 장철민 · 양양영

아주(비) · 윤준병 · 이형석

오영환 · 윤미향 · 김회재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18.4.17.)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제12조의2),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21.4.18.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형식승인의 대상임.

그러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기상측기를 검정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가 없음.

따라서,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종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3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신설).

법률 제 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에 관	<u><삭 제></u>
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적	
용한다.	
<u><신 설></u>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
	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
	을 받은 기상측기는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년 동안은 제12조의2
	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